



해외건설협회
International Contractors
Association of Korea



기술교육을 선도하는
건설기술교육원

해외건설협회-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력 협약서

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은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해외건설협회와 건설기술교육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상호존중] 양 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후 상호 간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 협력한다.

제3조 [협력분야]

- ① 인적·물적 자원 등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추진
- ② 개도국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 협력
- ③ 국내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자문
- ④ 기타 양기관간 상호발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

제4조 [협약의 변경]

-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.
- ② 본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③ 본 협약은 협약 만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협약해지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,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 [기타]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각각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2 년 7 월 7 일

해 외 건 설 협 회
회장 박 선 호

건 설 기 술 교 육 원
원장 박 민 우